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단508116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12. 3.

판결 선고 2016. 1.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59,236원 및 그 중 40,459,032원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2015. 6. 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4. 10.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6848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구상금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소결론 :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잔액 40,459,032원, 확정손해금 204원, 합계 40,459,236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40,459,03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6.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가. 구상금 청구권 및 사해행위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 청구권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2014. 10.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6848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55,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연대보증인이던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툼 없는 사실, 을 1~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C과 피고 B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 아래와 같이 피고 C은 실제로 D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고 D에 대하여 약 25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형사사건 도중 합의금 지급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상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경위는 아래와 같다.

- D는 2012. 3. 12.경 피고 C과 처 E으로부터 E 소유의 문경시 F 외 3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36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165,000,000원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D는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매매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후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280,000,000원 중 200,000,000원만 피고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65,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D는 2012. 4. 18.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고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2012. 7. 초경 피고 C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던 돈 합계 42,000,000원 중 34,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D가 위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피고 C과 처 E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피고 C은 2013. 10. 31.경 D를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D는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및 횡령죄의 유죄로 인정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 위 형사사건 도중 D가 합의금 지급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0. 23. 채권최고액이 255,000,000원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C은 2014. 10. 23. 위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한편, D는 2014. 10. 22. 피고 C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 255,000,000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을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라. 소결론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 C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이창현

별지